



보도 참고 자료

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
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

보도 일시	배포 후 즉시 사용	배포 일시	2022. 9. 28.(수)		
담당 부서	장애인정책국	책임자	과장	백경순	(044-202-3340)
	장애인서비스과	담당자	사무관	김성겸	(044-202-3344)

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신청하세요!

- 등록 여성장애인 산모, 태아 1인당 1백만 원 지원 -

□ 보건복지부는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사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, 지원 대상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홍보자료를 배포하고, 각 지자체, 장애 단체 및 유관기관 등과 제도 홍보 등 협조체계를 강화하였다고 밝혔다.

○ 보건복지부는 여성장애인이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비용이 소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여성장애인 산모에게 태아 1인당 1백만 원의 출산비용을 지원하고 있다.

○ 실제, 여성장애인은 비 장애여성에 비해 제왕절개 수술 비율 및 상급 의료기관 이용 비율이 높으며*, 장기간의 산후조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.

* 2018년 여성장애인 제왕절개 비율 59.8%(비장애여성 47.8%), 종합병원 이상 상급의료기관 이용 비율 25.7%(비장애여성 15.5%) :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 보험정책연구원 통계

□ 보건복지부는 본인 또는 가족이 행복출산통합서비스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신청을 누락*하거나 제도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하고 있다.

* 최근 3년간 평균 1,114명 이용하였으며, 올해 1,430명 지원 목표

○ 우선 지자체에는 ‘행복 이(e)음 누락서비스 조회’ 를 통한 미신청자 발굴을 요청하였으며, 보건소, 대한산부인과의사회, 장애단체 등에는 홍보 전단(리플릿)을 배포하여 제도 홍보 및 안내 등을 요청하였다(9.20.).

- 또한, 출생신고 및 행복출산통합서비스 신청자 중에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음에도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 명단*을 지자체에 제공하여 적기에 출산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.
 - * 출생신고 및 행복출산통합서비스 신청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필수 제출
-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사이트 또는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.
 - 소득 기준에 관계 없이 등록 여성장애인 중 출산(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신고 기준)*하거나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사산한 분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.
 - * 전년도 지원대상자 중 미수급자는 올해 예산 한도 내 지원 가능
 - 방문 신청의 경우, 본인 또는 그 가족이 신청할 수 있으며, 신청인 신분증,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을 지참하여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.
 - 특히,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사업은 행복출산통합서비스 대상에 해당하여 출생신고를 하면서 통합신청도 가능하다
 - 온라인 신청의 경우, 복지로 사이트의 검색창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검색 후 신청하기 또는 정부 24 사이트의 ‘생애주기/꾸러미 서비스’ → ‘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신청’ 에서 신청할 수 있다.
 -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가까운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콜센터(국번없이 129)로 문의하면 된다.
- 보건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“올해 약 1,400여 명의 여성장애인이 출산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며, 이번 사업이 여성장애인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 양육 부담 경감에 기여하기를 바란다” 라고 밝혔다.

- <붙임> 1.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사업 개요
2.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사업 홍보 전단(리플릿)

붙임 1

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사업 개요

- (사업목적) 출산 시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을 지원함으로써,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친화적인 문화 조성
- (사업대상) 등록 여성장애인 중 출산한 자 및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·사산*한 자
 - * 인공 임신중절 수술(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의 경우는 제외)은 지원 불가
- (사업방식) 지자체 경상보조(서울 50%, 지방 70%)
- (사업내용) 태아 1인 기준 1백만 원(현금지원)
- (신청방법) 방문 또는 온라인* 신청
 - (방문신청)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(우편 및 팩스신청 불가)
 - (정부24 온라인신청) 정부24 사이트 접속하여 임신·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(공인인증서 필요)
 - * 「정부 3.0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」 통한 임신·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 신청 가능
 - (복지로 온라인신청) 복지로 사이트 접속*하여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신청(공인인증서 필요) * 모바일로도 신청 가능
- 업무처리 절차

절 차	주 체	내 용
신청·접수	읍·면·동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신청방법(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방문신청 : 읍·면·동 직접 방문(구비서류 필요) - 온라인신청 : 정부24 사이트 또는 복지로 사이트 접속(공인인증서 필요) * 복지로 사이트 이용 시 가족에 의한 대리 신청 가능 (단, 대리 신청자의 공인인증서 필수) ○ 방문신청 시 구비서류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신분증 ② 신청서 ③ 입금계좌 통장사본 ④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 등본 등 * 개인정보제공 동의 시 ④주민등록 등본 등 제출 불필요 * 대리 신청 시 대상자와의 가족관계 확인 필요
대상자 자격확인	읍·면·동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등록장애정보 확인(행복e음을 통한 확인) ○ 지원대상 여부 확인(출생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및 의료기관 진단서 등)
결정 및 지급	시·군·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결정 ○ 개별 계좌 입금(e호조)

붙임 2

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사업 홍보 전단(리플릿)



여성장애인의 출산비용을 지원합니다



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이란?

비장애 여성에 비해 출산(유산, 사산 포함) 시 비용이 추가 소요되는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을 지원하는 제도
경제적 부담을 줄이고, 출산 친화적인 문화 조성하기 위한 서비스

지원 대상

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
출산(유산, 사산 포함)한 **여성장애인**(외국인 등록 장애인 포함)

당해연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자

*임신 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 및 사산한 자
*전년도 지원 대상자 중 미수급자는 예산 한도 내 지원 가능

신청방법



1 방문신청
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/면/동 주민센터 직접 방문
※ 출산통반서비스 대상에 해당하여 출생신고 시 통합신청 가능



2 온라인 신청
복지로 사이트 or 정부24 사이트 통해 신청 가능

지급방법

신청 시 제출한 여성장애인의 **본인 명의 계좌**로 입금 (지원금액)



출산(유산, 사산 포함)시 태아 1인 기준 **1백만 원** 지원

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서비스 이렇게 진행됩니다!

방문 신청 절차



복지로(온라인) 신청 절차

- 1 복지로 사이트(<http://www.bokjiro.go.kr>)접속
- 2 온라인신청의 복지서비스 > 여성장애인의 출산비용 지원선택
- 3 공인인증서 입력 후 서비스 신청
* 가족이 대리 신청 시 대리자 공인인증서 필수



문의 사항
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또는 읍/면/동 주민센터